**[이사회 평가 운영규정]**

**제 1 장 총 칙**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, 이사회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주식회사 신원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 평가는 회사의 이사회와 그 산하 위원회로(경영위원회, 보상위원회, ESG 위원회,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, 내부거래 심의 위원회, 사외이사 평가 위원회) 정한다.

제 3 조 (직무)

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별 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하고 검토한다.

제 4 조 (평가동의)

평가 진행시 개별 이사는 평가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한다.

**제 2 장 구 성**

제 5 조 (평가주체)

①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의장이 실시하며 그 구성은 이사회 및 유관 실무부서로 임직원으로 정한다.

② 위원회 평가는 각 위원회 의장이 실시하며, 그 구성원은 위원회 및 유관 실무부서 임직원으로 정한다.

제 6 조 (평가주기)

①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일시는 매년 12월로 정한다

제 7 조 (평가대상)

① 이사회와 개별 사내이사

② 이사회 위원회와 소속 위원

제 8 조 (평가방법)

① 평가는 질문지 및 설문 조사에 의한다.

② 경우에 따라 제 5조의 평가 주체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.

제 9 조 (평가항목)



**제 3 장 기 타**

제 10 조 (간사)

① 평가 수행시 평가주체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평가표의 작성 및 검토, 평가 결과의 집계 및 보고를 담당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